

<별표>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

[단위 : N=인원(인), R=1호당 거실¹⁾ 개수(개), A=연면적(m²)²⁾, P=정원(인)]

분류번호	건축물 용도		오수발생량			정화조 처리대상인원		
			1일 오수 발생량	BOD농도 (mg/L)	비고	인원산정식	비고	
1	주거시설	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공관	200 L/인	200	읍·면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170 L/인을 적용한다.	N = 2.0+(R-2)×0.5	-	
		농업인 주택	170 L/인	200	-			
		다중주택 ³⁾	7.5 L/m ²	200	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.			
	공동주택	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	200 L/인	200	읍·면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170 L/인을 적용한다.	N = 2.7+(R-2)×0.5	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.	
		기숙사, 고시원 (제2종근린생활시설) ⁴⁾	7.5 L/m ²	200	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.	N = 0.038A N 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	
2	문화및집회시설	공연장, 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	12 L/m ²	150	-	N= 0.060A	-	
		집회장	예식장, 공회당, 회의장, 장례식장	12 L/m ²	150	-	N= 0.060A	-
			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	25 L/m ²	150	-	N= 0.125A	-
		종교집회장	교회, 성당, 사찰, 제실(祭室), 사당	12 L/m ²	150	-	N = 0.060A	-
			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	7.5 L/m ²	200	-	N = 0.038A N 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
		관람장	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자동차 경기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	10 L/m ²	260	-	N= 0.050A	-
		전시장	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, 모델하우스	16 L/m ²	150	-	N= 0.080A	-
		동·식물원	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	16 L/m ²	150	-	N= 0.080A	-

분류번호	건축물 용도		오수발생량			정화조 처리대상인원		
			1일 오수 발생량	BOD농도 (mg/L)	비고	인원산정식	비고	
3	시장 · 상점	도매시장, 마을 공동구판장, 소매시장, 표구점, 소매점, 사진관, 의약품판매소, 도료류판매소, 서점, 장의사, 충포판매소, 애완동물점, 가축시장, 자동차영업소, 의료기기판매소	15 L/m ²	250	육류,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%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L/m ² ·일, BOD농도는 50 mg/L을 가산한다.	N= 0.075A	-	
		노래연습장	16 L/m ²	150	-	N= 0.080A	-	
		기원	25 L/m ²	150	-	N= 0.125A	-	
	판매 및 영업 시설	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·수선하는 시설	이용원, 미용원, 동물미용실	15 L/m ²	100	-	N= 0.075A	-
			세탁소	15 L/m ²	250	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.	N= 0.075A	-
			목욕장 ⁵⁾	46 L/m ²	100	-	N= 0.230A	-
			안마시술소, 안마원	15 L/m ²	100	-	N= 0.075A	-
			찜질방	16 L/m ²	100	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.	N= 0.080A	-
	게임 관련 시설	청소년게임 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	25 L/m ²	150	-	N= 0.125A	-	
		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)	20 L/m ²	250	매장면적 합계가 3천m ²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.	N= 0.100A	-	
		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	4 L/m ²	260	-	N= 0.057A	-	

분류번호	건축물 용도		오수발생량			정화조 처리대상인원			
			1일 오수 발생량	BOD농도 (mg/L)	비고		인원산정식	비고	
3	판매 및 영업 시설	음료·차(茶)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	즉석판매 제조·가공 식품점 ⁶⁾ , 배달전문점	30 L/m ²	130	배달전문점(배달판매, 포장판매) 내, 고객식사 공간이 있을 경우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.		N= 0.150A	-
		휴게음식점 등	35 L/m ²	100	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.	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.	N= 0.175A	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.	
	음식점	일반음식점	60 L/m ²	550	중식		N= 0.175A		
				330	한식, 분식점				
				200	일식, 호프, 주점, 뷔페				
150	서양식								
부대급식시설 ⁷⁾	15 L/인 (1일 1식 기준)	330	1일에 제공되는 끼니수가 1식이 추가될 경우 15L/인을 추가로 가산한다.		-	-			
4	종합병원		20 L/m ²	300	-	세탁 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.	N= 0.200A	-	
	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, 전염병원, 마약진료소		30 L/m ²	300	급식시설 있음		N= 0.150A	-	
			25 L/m ²	150	급식시설 없음		N= 0.125A	-	
	주민의 진료·치료 등을 위한 시설	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(接骨院), 조산원	18 L/m ²	150	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.		N= 0.090A	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.	
			15 L/m ²	150	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.		N= 0.075A	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.	
		산후조리원	30 L/m ²	300	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.		N= 0.150A	-	
	동물병원, 인공수정센터		15 L/m ²	150	-		N= 0.075A	-	

분류번호	건축물 용도		오수발생량			정화조 처리대상인원			
			1일 오수 발생량	BOD농도 (mg/L)	비고	인원산정식	비고		
5	초등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		6 L/m ²	100	-	N= 0.050A N= 0.2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		
	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, 대학교, 교육원, 전문대학, 직업훈련소	주간	7 L/m ² (중학교) 8 L/m ² (중학교 이외)	100	-	N = 0.058A (중학교) N = 0.067A (중학교 이외) N = 0.33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		
		주·야간 병설	12 L/m ² (중학교) 14 L/m ² (중학교 이외)					N = 0.100A (중학교) N = 0.116A (중학교 이외) N = 0.33P+0.2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
	연구소, 시험소, 동물검역소, 계측계량소		8 L/m ²	100	-	N= 0.067A N= 0.33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		
	공공도서관, 독서실, 도서관, 학원, 교습소		15 L/m ²	150				N= 0.075A	-
	고아원, 일시보호시설, 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, 노인복지시설, 연수원, 청소년 수련원, 사회복지시설, 근로복지 시설		9 L/m ²	200				N= 0.045A N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
	유스호스텔		9 L/m ²	140	-	N= 0.045A N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		
6	탁구장, 당구장, 체육도장, 헬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사격장, 라켓볼장, 스쿼시장, 실내·외낚시터, 스케이트장, 롤러스케이트장, 썰매장, 수영장, 놀이형 시설, 골프연습장, 스크린 골프연습장, 실내테니스장		15 L/m ²	100	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(목욕장 용도)로 산정한다. 실외낚시터의 경우 낚시터 부속용도 외 부대시설(펜션, 카페 등)에 대해 각 용도별로 적용하여 산정한다.	N = 0.075A	-		
	골프장		30 L/m ²	100		N = 0.150A	-		
	물놀이형 시설		40 L/m ²	100		N = 0.200A	-		
	실외 테니스장	야간조명시설 있음	3 L/m ²	150		N = 0.015A	-		
		야간조명시설 없음	2 L/m ²	150		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실외	N = 0.010A	-	

분류번호	건축물 용도		오수발생량			정화조 처리대상인원	
			1일 오수 발생량	BOD농도 (mg/L)	비고	인원산정식	비고
	게이트볼장	야간조명시설 있음	1 L/m ²	150	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.	N = 0.005A	-
		야간조명시설 없음	0.5 L/m ²	150		N = 0.003A	-
7	일반 업무시설	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, 신문사	15 L/m ²	100	-	N= 0.075A	-
		금융업소	15 L/m ²	100	-	N= 0.150A	-
		오피스텔	10 L/m ²	200	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(아파트)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.	N= 0.050A	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(아파트)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.
	공공 업무시설	외국공관, 공공청사,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전신전화국, 건강보험공단 사무소	15 L/m ²	100	-	N= 0.150A	-
		보건소	18 L/m ²	150	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.	N= 0.090A	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.
15 L/m ²	150		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.	N= 0.075A	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.		
8	숙박시설	일반숙박시설, 관광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,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⁸⁾	20 L/m ²	70	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.	N= 0.080A	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.
			20 L/m ²	140	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.	N= 0.080A N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.

분류번호	건축물 용도	오수발생량			정화조 처리대상인원		
		1일 오수 발생량	BOD농도 (mg/L)	비고	인원산정식	비고	
	관광펜션	35 L/m ²	140	-	N= 0.140A	-	
	농어촌민박시설	35 L/m ²	140	주거 전용 면적이 100m ²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 숙박시설 용도(취사시설이 있는 경우)를 적용할 수 있다.	N= 0.140A	주거 전용 면적이 100 m ²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 숙박시설 용도(취사시설이 있는 경우)를 적용할 수 있다.	
	일반야영장, 자동차야영장	9 L/m ²	320	전체면적 중 야영 사이트, 숙박시설, 관리동, 화장실, 샤워실, 대피소, 취사 시설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의 면적만 합산한다.	N= 0.045A N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전체면적 중 야영 사이트, 숙박시설, 관리동, 화장실, 샤워실, 대피소, 취사 시설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의 면적만 합산한다.	
	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	20 L/m ²	140	전체면적 중 야영 사이트, 숙박시설, 관리동, 화장실, 샤워실, 대피소, 취사 시설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의 면적만 합산한다.	N= 0.080A N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전체면적 중 야영 사이트, 숙박시설, 관리동, 화장실, 샤워실, 대피소, 취사 시설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의 면적만 합산한다.	
9	위락 시설	단란주점, 유흥주점	46 L/m ²	250	-	N= 0.230A	-
		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⁹⁾	15 L/m ²	100	-	N= 0.075A	-
		투전기업소, 카지노영업소	25 L/m ²	150	-	N= 0.125A	-
		무도장, 무도학원	16 L/m ²	150	-	N= 0.080A	-
10	공업 시설	공장, 정비공장(카센터 포함)	5 L/m ²	100	-	N= 0.125A N= 0.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
		양식장(양어장)	5 L/m ²	100	-	N = 0.125A	-
		식품제조·가공업 ¹⁰⁾	15 L/m ²	100	제조·가공 주요 공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의 용도를 적용한다.	N= 0.125A N= 0.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
		제조업소, 수리점	5 L/m ²	100	-	N= 0.125A N= 0.5P	-

분류번호	건축물 용도		오수발생량			정화조 처리대상인원		
			1일 오수 발생량	BOD농도 (mg/L)	비고	인원산정식	비고	
						(정원이 명확한 경우)		
	자원순환 관련 시설 (하수 등 처리시설, 고물상, 폐기물 재활용시설, 폐기물 처분시설, 폐기물 감량화 시설)		5 L/m ²	100	-	N= 0.125A N= 0.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	
	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(주유소,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)		25 L/m ²	260	-	N= 0.125A	-	
11	자동차 관련 시설	주차전용건축물 ¹¹⁾ , 주기장 ¹²⁾	15 L/m ²	260	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,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.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 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1일 폐수발생량을 별도로 산정한다.	N= 0.075A	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,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.	
		(자동차)매매장	15 L/m ²	100	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.	N= 0.075A	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.	
12	공공용 시설	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, 교도소), 갯생보호시설,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, 국방·군사시설	7.5 L/m ²	200	-	N= 0.038A N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	
		촬영소	15 L/m ²	100	-	N= 0.075A	-	
		군대숙소	300 L/인	200	-	N= 0.038A N= 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	
		공중화장실	170 L/m ²	260	-	N= 3.400A	-	
		주민공동이용 시설	마을회관	12 L/m ²	150	-	N = 0.060A	
			마을공동작업소, 대피소	5 L/m ²	100	-	N = 0.125A N = 0.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
			마을공동구판장	15 L/m ²	250	-	N = 0.075A	
공중화장실	170 L/m ²		260	-	N = 3.400A			
	지역아동센터	6 L/m ²	100	-	N = 0.050A N = 0.2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		

분류 번호	건축물 용도		오수발생량			정화조 처리대상인원	
			1일 오수 발생량	BOD농도 (mg/L)	비고	인원산정식	비고
	에너지 공급·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·배수와 관련된 시설	발전소, 변전소, 가스공급시설, 통신용시설, 정수장, 양수 장 등	5 L/m ²	100	-	N= 0.125A N= 0.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
13	묘지 관련 시설	화장시설, 봉안당	16 L/m ²	150	-	N = 0.080A	-
14	관광 휴게 시설	야외음악당, 야외극장	10 L/m ²	260	-	N= 0.050A	-
		어린이회관	6 L/m ²	100	-	N= 0.050A N= 0.25P (정원이 명확한 경우)	-
		관망탑	16 L/m ²	150	-	N= 0.080A	-
		휴게소	20 L/m ²	260	-	N= 0.400A	-
15	기타 시설	농막 ¹³⁾	100 L/인	200	-	N = 2인/개소	농막의 경우 1개소당 2인 으로 산정한 다.

- 주. 1) 거실이란,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, 거주, 집무, 작업, 집회, 오락,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,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. 다만,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, 드레스룸,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(세탁실, 보일러실, 창고 등)은 거실에서 제외한다.
- 2) 연면적이란,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(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)의 합계를 말한다. 다만,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, 공조실, 캐노피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.
- 3) 다중주택이란,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(취사시설이 없는 경우)을 말한다.
- 4)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.
- 5) 목욕장이란, 공동탕, 가족탕, 한증막, 사우나탕을 포함한다.
- 6)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·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떨어져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(예시 : 반찬·죽·떡 가게 등).
- 7)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공업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(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)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.
- 8) 다중생활시설이란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다목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- 9) 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은 유기사설(遊技施設)이나 유기기구(遊技機具)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(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

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)을 말한다.

- 10)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(예시 : 김치 공장 등).
- 11) 주차전용건축물이란,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,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.
- 12) 주기장이란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(重機)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.
- 13) 농막이란,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,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,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(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,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.